

# 생물자원시대 생물자원의 지역주권과 강원도

원대성 책임연구원 | 2013년 11월 26일

## Contents

생물자원시대 현안

1.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2. 생물자원 패러다임
3. 부처별 대응현황
4. 나고야의정서관련 국외동향
5. 강원도지사사점 및 정책 제언





### SUMMARY

#### 《 현안 및 배경

-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했던 생물유전자원의 패러다임 변화 => 생물주권인정
- 바이오산업 육성이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부각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급증
- 자원보유국과 자원 이용국간의 의견대립 및 생물자원 확보 경쟁 심화
-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로열티 지불 등 도내 관련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 예상

####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나고야의정서(ABS)의 핵심은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통보, 승인, 이익공유
- 우리나라는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 법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중앙부처의 전략 및 제도와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전략 역량을 강화 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도모
- 도내 잠재력 있는 생물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ABS Help Desk 설치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전문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
  - ◇ 강원도는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별 소재지 분석 결과 '바이오식품산업(9.7%)', '바이오환경산업(10.8%)', '바이오전자산업(18.5%)이 도내에 분포하고 있음





## 생물자원시대 현안

-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했던 생물유전원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하는 바이오산업 선진국들은 자국 내 생물자원 보전과 해외 생물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 생물자원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에너지·보건 등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
  - ◇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바이오산업분야 육성에 집중
  - ◇ 하지만 현재 빠른 기후변화와 인간편의 위주의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급증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CBD, '93)에 따라 자원보유국의 자국 자원 보호와 권리주장이 대두 되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10년 10월 채택됨으로써 자원보유국과 자원 이용국간의 의견대립 및 생물자원 확보 경쟁 심화
  - ◇ ABS의 핵심은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사전통보, 승인, 이익공유
  - ◇ 우리는 자원이용국 입장에서 자원제공국의 ABS 국내법 등 규제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

- 조류인플루엔자(AI)의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와 같이 생물 자원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를 통해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부각

◇ 타미플루 개발사인 다국적 제약사 ‘로슈’사는 2009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간 보다 203% 증가된 9억3천800만불 매출 달성



★ 타미플루의 주원료 : 스타아니스(중국자생식물)

- 중국 토착 식물 유래 물질 활용 제품 개발(로슈 사)
- 막대한 시장 창출 : 1회분 비용 약 60불 추정  
미 보건부 1,200만불 주문  
WHO 비축분 3,000만 캡슐

<사진출처: ABS 산업지원센터, <http://www.abs.kr>>

-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07년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 법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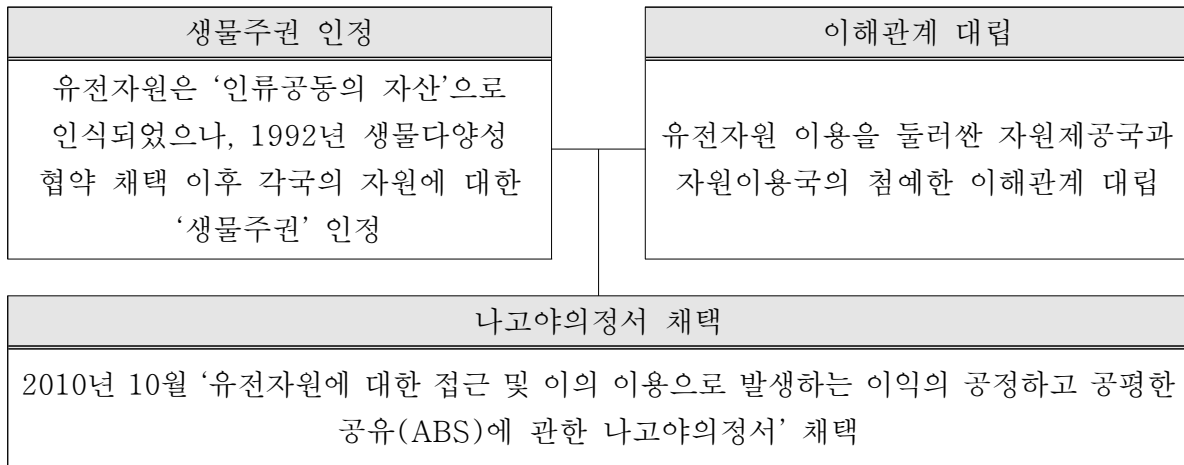
◇ 생명자원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생명자원 실�크로드’ 구축 필요  
<과학기술혁신본부, ‘생명자원 확보, 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2008>

- 나고야의정서에 발효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관련업계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
  -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로열티 지불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은 연간 약 22억원에서 71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나고야 의정서의 범위가 바이오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
    - <박호정,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2012>
  - ◇ 경기도의 경우 제약·화장품·식품 업체의 60%이상이 제품 생산 시 해외 생물자원 활용
  - ◇ 2010년 자료 기준 경기도 생물자원산업은 현재 지불하는 로열티 외에 연간 309~1,545억 원 추가 부담 발생 추산
    - <경기개발연구원, 생물자원 전쟁이 시작된다!, 2012>
  -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액 산출 등 강원도 생물자원산업 현황파악이 시급함
  
- 따라서 본 브리프에서는 국내 관련부처와 해외 생물자원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 생물자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 시대에 강원지역 생물주권을 확보를 통해 지역생물자원의 무형적 가치를 유형적 경제적 가치로 승화시켜 강원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1.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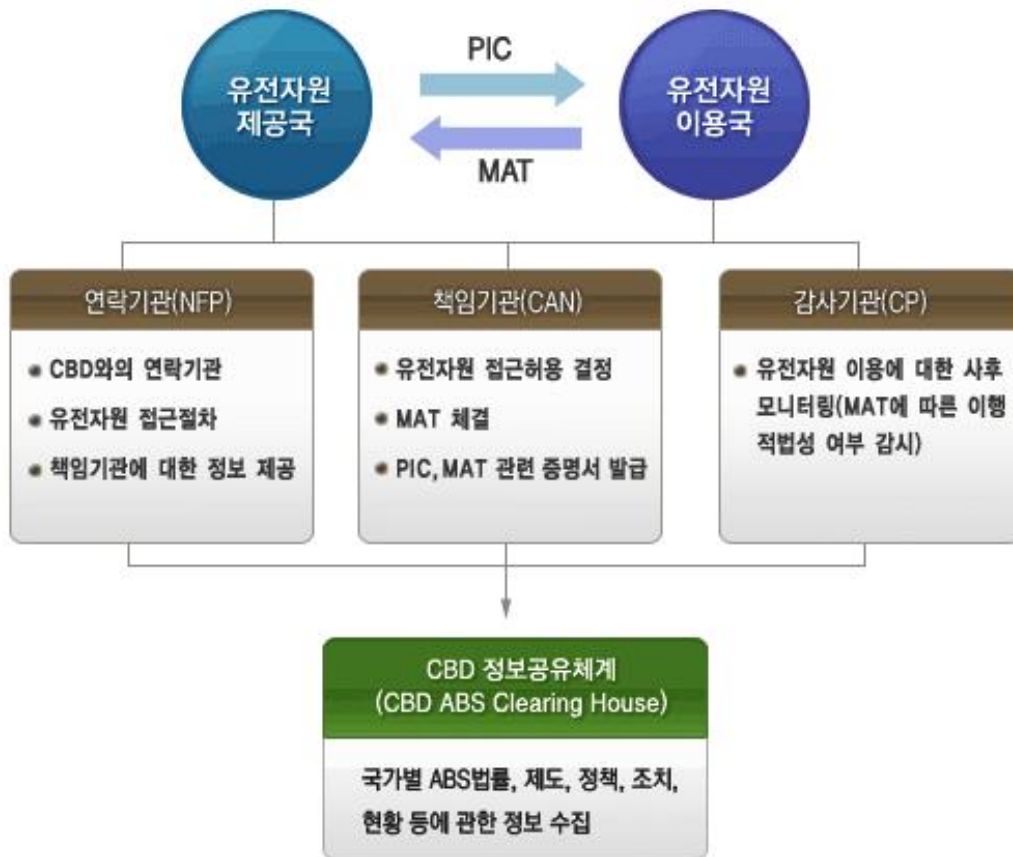
### □ 나고야의정서 채택 배경



### □ 나고야의정서(ABS)의 주요 내용

- ◇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보 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필요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승인을 받아야 함
-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 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방법 등에 대해 MAT에 기술하고 이에 대해 상호간 합의
- ◇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
  -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MAT를 통해 접근과 이익공유가 가능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 CBD 사무국은 정보공유를 위해 클리어링 하우스를 두어 당사국의 제도, 정책, 조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자원제공국과 각 당사국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지원
- 나고야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본-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과는 달리 자원 제공국의 국내 관련법을 자원 이용 국에 대해 현지 외 효력을 부여하고 그 효력 부여를 위한 조건과 절차를 나고야의정서가 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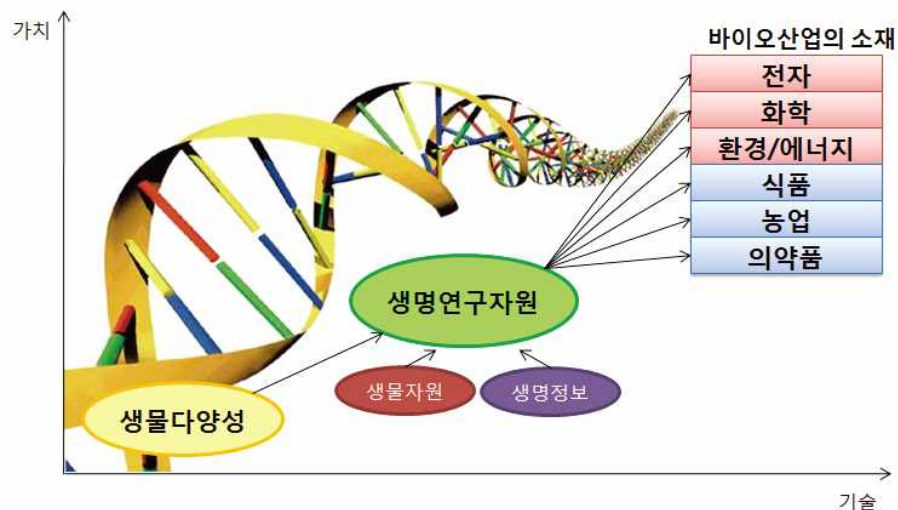
## 2. 생물자원 패러다임 변화

### □ 유전자원을 모태로 한 생명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

-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인류의 공동자산이란 관점에서 생물자원과 이에 대한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자원 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생물자원을 무기화하고, 고도의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지닌 기술선진국은 독점적 개발기술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는 '생물자원과 기술전쟁'의 대결구도 국면으로 이어져, 생물 다양성을 통한 유전자원의 확보 및 활용기술이 21세기 생명공학산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

### □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경제적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 ◇ 생물유전자원의 응용사업 확대



<출처 : 한국연구재단, 2011>

- ◇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신 작물개발, 고부가가치 산업소재, 새로운 에너지원 등으로 발전하고 있음

▶ **신 작물(종자) 개발**

인류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던 종자는 기후변화와 농업 외면 확대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종자산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현재 약 700억 달러 내외이며, 연평균 5.2%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법의 접목으로 성장률은 더욱 빠르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 됨.

▶ **고부가가치 산업소재**

생존을 위해 자연환경에 최적으로 진화된 유전자원은 산업소재로서 최고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 유전자원에서 개발되는 산업소재는 인체에 친화적이어서 섬유, 의료소재, 식품 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새로운 에너지원**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는 한정된 매장량이 아니라 영구적이며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화석연료의 한정된 매장량과 온실 가스 배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함.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있어 유전자원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궁무진한 소재의 원천임. 현재 바이오 에탄올 등 제1세대 바이오 에너지부터, 미세조류를 이용한 제2세대,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 개발 까지 진행 중에 있음.



### 3. 부처별 대응 현황

| 부 처         | 법/계획 명   |
|-------------|--|
| 미래창조<br>과학부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09) 및 개정('13)*<br>*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기구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변경  |
| 농림축산<br>식품부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3)<br>※ 농수산생명자원 관리·이용 및 국외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 시행('12)에 이어,<br>농업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 간의 영역 및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개정('13)          |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2)<br>※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관리를 통한 자원 가치 제고 및 산림자원범위 확대<br>(산림 곤충), 산림 종자의 품종 등록 사항 개선·보완                                |
| 농림축산<br>식품부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2)<br>※ 국제 평가기준에 의거한 희귀·특산식물의 목록 제공  |
| 산업통상<br>자원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br>※ ①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생산 공정 중 이용에 대한 규제 및 승인을 통한<br>안전성 강화, ②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br>조사 관련 내용 등 포함 |
| 보건<br>복지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12) 및 시행('13)<br>※ ① 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 적용,<br>② 인체유래물 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포함                         |
| 환경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12)<br>※ 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②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등을 포함   |
| 해양<br>수산부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br>※ 국내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획득 및 해외유출을 방지하고,<br>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제<br>도적 근거를 마련 |



## 4.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외 동향

### □ ABS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 ◇ 선진국은 비강제적인(non-binding) 형태의 국제규범을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강제적인(legally binding) 국제규범을 주장

| 구분                | 주요입장   | 비고   |
|-------------------|--|--|
| 개발도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인도, 우간다, 네수엘라 등 개도국들은 조기 ABS 국제규범 개발 주장</li> <li>- ABS 이행준수 강화를 위해 PIC 및 MAT 준수, 국제인증제도 실시</li> <li>- ABS 적용대상은 모든 유전자원, 상품, 파생물, 전통 지식까지 포함되어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 주장</li> <li>- 유전자원 오용·악용방지필요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갖는 국제규범 필요</li> <li>- 국제규범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li> </ul>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S 국제규범 개발협상에 개발도상국 참여확대,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법적 합리적 공식적 참여 주장</li> <l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적인 입장</li> <li>- 강제적인 PIC와 MAT를 배제하지 않으나, 심층논의 필요성 주장</li> <li>- 국제규범의 부문별 접근방식 지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공개자체는 찬성하나, 특허 요건화는 반대</li> <li>- FAO 표준물질이전협정과 같이 모델조항 개발 필요성 강조</li> </ul>  |
|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S 적용대상에서 파생물 제외, 파생물은 자원제공국과 이용공간 상호합의조건으로 처리해야 함</li> <li>- 강제적인 규범 보다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제 규범이 바람직 함</li> <li>- 국내법 절차를 통한 이행준수 지지</li> <li>- 원주민 권리보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전통지식의 정의와 권리자의 범위 확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는 반대, WPO에서 논의되어야 함</li> <li>- 비용효과적인 국제인증제도 도입 필요</li> <li>- 국제규범은 제7차 COP 결정</li> <li>- 19/D에 명시된 것에 한정</li> </ul>     |
| 우리나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규범의 성격, 범위, 목적, 구성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실한 GAP 분석 필요</li> <l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익배분은 기존 지식재산권 체제를 통해 보호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 반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안별로 법적 구속력 판단할 필요 있음</li> <li>- 국제레짐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최소 조건 및 기준개발은 반대</li> <li>- 해양은 관할권범위가 불명확 하므로, 관할권 교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신중 필요</li> </ul> |

<출처 :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최근동향 및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2008>

## □ 국가별 ABS 법-제도 비교표

◇ 현재까지 ABS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경우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에 이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         | 아프리카     | 브라질      | 중국   | 코스타리카 |
|-------------|---------|----------|----------|------|-------|
| 법-정책적 프레임워크 | 지적재산권   |          |          | ○    |       |
|             | 이익공유    | ○        | ○        |      | ○     |
|             | 원주민 권리  |          |          |      |       |
|             | 반경쟁 금지  |          |          |      |       |
| 정책수단        | 접근규제    | ○        | ○        |      | ○     |
|             | 독점권     |          | ○        | ○    | ○     |
|             | 반경쟁 금지  |          |          |      | ○     |
|             | 관습법     | ○        |          |      |       |
| 주제범위        | 전통지식    | 생물자원     | 유전자원     | 전통의약 | 생물다양성 |
|             | GRTK보유자 | 부족 및 원주민 | 부족 및 원주민 |      |       |
| 정책목표        | GRTK보존  | ○        | ○        |      | ○     |
|             | 혁신촉진    |          |          | ○    |       |
|             | 호혜공유    | ○        |          |      | ○     |
|             | 지속가능발전  | ○        |          |      |       |
| 보호방식        | 포지티브    | ○        | ○        | ○    | ○     |
|             | 네거티브    | ○        | ○        | ○    | ○     |
|             | 접근규제    | ○        | ○        | ○    | ○     |
| 관련된 무형자산 규제 |         | ○        | ○        | ○    | ○     |
| 예외조항        |         | 전통적 사용   |          |      |       |

|             |         | 인도     | 페루       | 필리핀     | 미국 |
|-------------|---------|--------|----------|---------|----|
| 법-정책적 프레임워크 | 지적재산권   |        | ○        |         | ○  |
|             | 이익공유    | ○      | ○        |         |    |
|             | 원주민 권리  |        | ○        | ○       |    |
|             | 반경쟁 금지  |        | ○        |         | ○  |
| 정책수단        | 접근규제    | ○      | ○        | ○       | ○  |
|             | 독점권     |        | ○        | ○       | ○  |
|             | 반경쟁 금지  |        | ○        |         |    |
|             | 관습법     |        | ○        | ○       |    |
| 주제범위        | 전통지식    | 생물자원   |          |         |    |
|             | GRTK보유자 | 지역거주민  | 부족 및 원주민 | ICC/IPs |    |
| 정책목표        | GRTK보존  | ○      | ○        |         | ○  |
|             | 혁신촉진    |        | ○        |         | ○  |
|             | 호혜공유    | ○      | ○        | ○       |    |
|             | 지속가능발전  |        | ○        | ○       | ○  |
| 보호방식        | 포지티브    | ○      | ○        | ○       | ○  |
|             | 네거티브    | ○      | ○        |         | ○  |
|             | 접근규제    | ○      | ○        | ○       |    |
| 관련된 무형자산 규제 |         | ○      |          | ○       |    |
| 예외조항        |         | 전통적 사용 | 전통적 사용   |         |    |

<출처 : 통계청, 2009>

## □ 자원 이용국의 ABS 대응 사례

### ◇ 일본

- 생물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자원 이용국으로 기술을 통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이루어 왔음
- 대응 정책은 경제산업성(METI) 주도, 실무측면은 바이오산업협회(JBA), 국제 공동 연구개발부문은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가 유기적인 협력 및 모니터링 수행 중

#### - 일본 생물다양성 가이드 라인 -

- ▶ 유전자원에의 접근에 대한 길잡이(遺傳資源へのアクセス手引)
- ▶ 일본 바이오인더스트리 협회(JBA)에서 2005년 3월 발간
- ▶ 일본 산업계와 시험연구기관 등에 의해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산업계, 전문가 및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일본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의견 등을 반영함
- ▶ 가이드라인의 목표
- ▶ 자원제공국이 가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배분이 적절하게 실시됨으로써, 제공자와 이용자 쌍방이 이익을 누리고 win-win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 ▶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시에 비즈니스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문제발생 리스크를 경감할 것. 이를 위해 CBD나 Bonn Guidelines의 주요 규정과 용어를 이용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예를 제시할 것

<출처 : ABS 산업지원센터.2013>

## ◇ 독일

- 환경부(BFN)주도 하에 '05년 생물다양성협약(CBD) 대응 국내 유전자원이용 현황 조사, '11년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 독일국제협력공사(GIZ) “생물무역을 위한 능력형성 프로젝트(Capacity Building for Biotrade, CBBT)” 추진(네팔, 페루, 나미비아)

- ▶ 생물무역을 위한 능력형성 (CBBT) 프로젝트
- ▶ 생물무역을 위한 능력형성 프로젝트의 가이드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 자문 그룹 (PAG)은 생물 무역 제품 리스트화
- ▶ 시장 잠재성과 생물다양성 기반 제품의 무역 장벽에 대해 조사
- ▶ 조사 및 연구결과와 ‘프로젝트자문그룹(PAG)의 제안을 기초로 ‘Juniper, Ant-hropogen, Wintergreen’오일을 프로젝트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
- ▶ 네팔 무역수출진흥센터와 현지 4개 수출업체가 함께 BioFach 2011(독일 Nu-rnberg에서 열린 유기농 박람회)에 유기농 오일 출품
- ▶ 공동 마케팅 전략기획, 그룹라벨 디자인, 공동 브러셔 발행, 유기농 박람회 BioFach 출품, 에센셜 오일 관련 네 개 회사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제작

 BioFach 2011

 *Essential Oils of Nepal*



네팔 에센셜 오일 브로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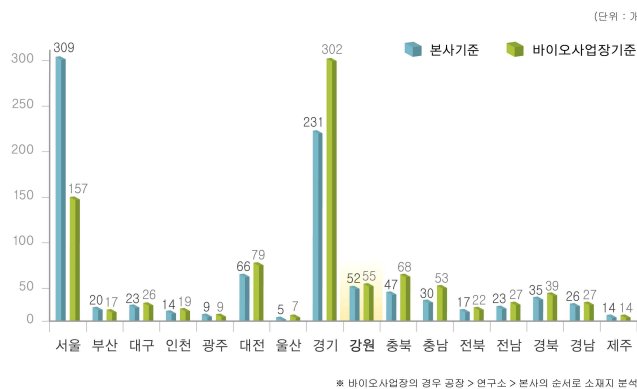
<출처 : ABS 산업지원센터.2013>





## 5. 강원도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중앙 관련 부처와 연계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전략 역량 강화
  - ◇ 다양화 되어가는 각 관련 부처의 전략 및 제도와 연계하여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도모
  - ◇ 강원지역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연계한 생물자원 보전, 발굴, 이용 등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지역 계획 수립 필요
  
- 강원도 생물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
  - ◇ 강원도는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별 소재지 분석 결과 ‘바이오식품산업(9.7%)’, ‘바이오환경산업(10.8%)’, 바이오전자산업(18.5%)이 도내에 분포하고 있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3>

-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릉해양바이오진흥원을 주축으로 관련 인프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강원도 전역을 네트워크 광역화하는 전략 필요
- ◇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DMZ, 백두대간 등 생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유용생물자원 조사 및 그 지역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과 보급을 통한 대응력 강화

## □ 강원 지역 자생 유용생물자원 발굴 및 전통지식 보전

- ◇ 강원지역 전반의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유용 생물자원과 이에 연관된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화 필요(유용생물자원 도감, 지역토종자원 도감 등)

## □ '14 평창유엔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개최를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

- ◇ 국제협력 대응 및 국제동향 파악등과 관련 전문 인력 확보
- ◇ 한국형(평창) 생물다양성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 창조경제시대 생물자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 지역생물자원 주권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동력이 된다는 의식 전환
- ◇ 생물자원 확보 ⇨ 연계 ⇨ 정보화 ⇨ 활용 ⇨ 산업화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 강원지역 「ABS Help Desk」 설치 운영

- ◇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관련 규약, 정책, 법률의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도내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복잡하고 생소한 절차와 관리체계가 예상되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관 기업, 유관 기관, 전문가 간 충분한 정보공유가 요구됨
  - 현재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ABS산업지원센터에서 설치 운영중 -





- 발행인 : 박 주 택
- 발행처 :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발행일 : 2013년 12월 2일

---

[www.crik.re.kr](http://www.crik.re.kr)

